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산사고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 신설 >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17호)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97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가. 전산사고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4
나.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책임	12

I. 제안경위

1. 이현승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3. 7.

다. 회 부 일 : 2025. 3. 10.

2. 강훈식의원안

가.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7.

다. 회 부 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현승의원안

현행법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의 가

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未備)하여 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2. 강훈식의원안

현행법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Ⅲ. 검토의견

가. 전산사고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개정안은 전산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명시하되, 전산사고의 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현승의원안 제7조의2 신설 등 및 강훈식의원안 제8조).

현행	이현승의원안	강훈식의원안
<신설>	제7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현행	이헌승의원안	강훈식의원안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u>의 위조나 변조로 발</u> <u>생한 사고</u> <u>2. 제2조제2호 각 목의</u> <u>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u> <u>거래지시(이용자</u> <u>가 가상자산사업자에</u> <u>게 가상자산의 매매,</u> <u>교환, 이전 또는 보관</u> <u>· 관리 등의 처리를</u> <u>지시하는 것을 말한</u> <u>다) 등에 관한 정보의</u> <u>전자적 전송이나 처리</u> <u>과정에서 발생한 사고</u> <u>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u> <u>「정보통신망 이용촉</u> <u>진 및 정보보호 등에</u> <u>관한 법률」 제2조제1</u> <u>항제1호에 따른 정보</u> <u>통신망(이하 이 조에</u> <u>서 “정보통신망”이라</u> <u>한다) 또는 컴퓨터 등</u> <u>전자적 장치에 침입하</u> <u>여 거짓이나 그 밖의</u> <u>부정한 방법으로 획득</u> <u>한 접근매체를 이용함</u> <u>으로써 발생한 사고</u> <u>4. 다음 각 목의 방법으</u> <u>로 가상자산거래를 위</u> <u>한 정보통신망, 이와</u>	

현행	이헌승의원안	강훈식의원안
	<u>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u> <u>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u> <u>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u> <u>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u>	

현행	이헌승의원안	강훈식의원안
<u>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u> <u>상자산사업자는 해킹·</u> <u>전산장애 등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사고에</u> <u>따른 책임을 이행하기</u> <u>위하여 금융위원회가</u> <u>정하여 고시하는 기준</u> <u>에 따라 보험 또는 공</u>	<u>할 수 있다.</u> <u>1. 전산사고 발생에 있어</u> <u>서 이용자의 고의나</u> <u>중대한 과실이 있는</u> <u>경우로서 그 책임의</u> <u>전부 또는 일부를 이</u> <u>용자의 부담으로 할</u> <u>수 있다는 취지의 약</u> <u>정을 미리 이용자와</u> <u>체결한 경우</u> <u>2. 법인(「중소기업기본</u> <u>법」 제2조제2항에 의</u> <u>한 소기업을 제외한</u> <u>다)인 이용자에게 손</u> <u>해가 발생한 경우로</u> <u>가상자산사업자가 전</u> <u>산사고를 방지하기 위</u> <u>하여 보안절차를 수립</u> <u>하고 이를 철저히 준</u> <u>수하는 등 합리적으로</u> <u>요구되는 충분한 주의</u> <u>의무를 다한 경우</u> <u>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u> <u>상자산사업자는 전산</u> <u>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u> <u>행하기 위하여 금융위</u> <u>원회가 정하여 고시하</u> <u>는 기준에 따라 보험</u> <u>또는 공제에 가입하거</u> <u>나 준비금을 적립하는</u>	<u>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u> <u>책임) ① (이헌승의원</u> <u>안 제7조의2제1항과 같</u> <u>음)</u>

현행	이헌승의원안	강훈식의원안
제에 가입하거나 준비 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이헌승의원안 제7조 의2제2항과 같음) ③ (이헌승의원안 제8조 와 같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¹⁾의 위조·변조로 인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하되,²⁾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⁴⁾

□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규율을 위하여 2023년 7월에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제8조 등⁵⁾), 「전자금융

특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래법」과는 달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산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명시하되,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산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는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시장질서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 다만,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나 수준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음.

[표]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비교

구분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손해배상책임	주체	- 가상자산사업자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요건	- 전산사고 + 이용자 손해 발생	- 전산사고 + 이용자 손해 발생
	면책	- 이용자 고의·중과실 + 면책약정 사전 체결 - 가상자산사업자의 충분한 주의의무	- 이용자 고의·중과실 + 면책약정 사전 체결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충분한 주의의무
전산사고의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	- 안전성 확보의무(§21) → 위반시 업무정지(§43), 과징금(§46), 과태료(§51)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21의2) → 위반시 과태료(§51)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21의3) → 위반시 과태료(§51) - 침해사고 통지(§21의5) → 위반시 업무정지(§43), 과태료(§51)

- 금융위원회도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IT보안 의무 등의 확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책임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신설).

현 행	이헌승의원안
<신 설>	제8조의2(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⁶⁾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임.⁷⁾

□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가상자산의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발생 시에도 이용자의 즉각적인 신고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11

6)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